
입 법 정 보

2019-17호



목 차



1.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4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4
3.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	5
4.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	5
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6
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7
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	7
8.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8
9.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9
1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9
11.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0
12.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
13. 국립항공박물관법 시행령 제정(안) (국토교통부).....	12
14.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	13
1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5
16.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5
17.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6
18.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7
19.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8
20.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8
21.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8
2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19
23.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20
24.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20
2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21
2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21
27.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21
28.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교육부).....	22
29.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22
30.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23
3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24
3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24
3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25
3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26

3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26
3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	27
37.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28
38.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안) (인사혁신처).....	29
39.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9
40.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30
41.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30
4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30
4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31
44.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31
45.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32
4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33
47.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33
4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34
49.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외교부).....	35
50.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외교부).....	36
5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	36
52.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37
5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37
54.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38
55.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38
56.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	39
57.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40
58.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40
59.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	41
60.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43

정부입법 예고

1.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9. 8. 26. ● 마감일자 : 2019. 10. 7.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전부개정(대통령령 제29269호, 2018. 10. 30. 공포, 2018. 11. 1. 시행, 관련 조항은 2019. 11. 1.시행)됨에 따라 우리사주를 의무적으로 환매수하여야 하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에 따라 이를 정비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의무적으로 우리사주를 환매수하여야 하는 회사의 범위를 비상장 법인으로서는 근로자 수가 300인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로 정하되, 근로자 수 산정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는 제외함.(안 제27조의2제1항)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9. 8. 27. ● 마감일자 : 2019. 10. 7.
-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을 건강보험 적용함에 따라, 2·3인실 입원료의 본인부담률 차이로 입원료란을 구분하고, 설명란에 동일한 문구 사용을 위해 영수증 서식을 변경하고,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된 사항의 범위 초과 사용에 대하여 전문평가위원회에서 검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용어를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 “기존급여 여부 확인”으로 약칭을 정비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여 현장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관련 영수증 서식 변경(안 별지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서식 수정)
- 나.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된 사항의 범위 초과 사용에 대하여 전문평가위원회에서 검토(안 제11조제8항)
- 다.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을 ‘기존급여 여부 확인’으로 약칭(안 제9조의2 등)

3.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

- 예고일자 : 2019. 8. 27.
- 마감일자 : 2019. 10. 7.

- 국가 차원의 국가등록문화재와 함께 시·도에서 시·도등록문화재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6057호, 2018.12.24. 공포, 2019.12.25.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단순 나열식으로 규정된 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를 미술·전적·생활기술·자연사 분야로 구분하고, 각 분야별 적용 예시를 규정함으로써 일반동산문화재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알기 쉽게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자구 변경(안 제33조, 제33조의2, 제34조 및 제35조)
- 나. 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를 미술·전적·생활기술·자연사 분야로 구분하고 분야별 예시를 규정함(안 제36조)

4.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

- 예고일자 : 2019. 8. 27.
- 마감일자 : 2019. 10. 7.

- 국가 차원의 국가등록문화재와 함께 시·도에서 시·도등록문화재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6057호, 2018.12.24. 공포, 2019.12.15. 시행)됨에 따라 시·도 등록문화재의 보고에 관한 사항 및 관련 서식을 개정하고, 그동안 모호했던 일반동산문화재의 구체적인 범위의 적용기준을 명확하게 구체화하는 한편, 천

연기념물 조난동물 치료결과 보고서를 전자문서도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천연기념물 조난동물 치료결과 보고 및 경비 청구서 제출 시 전자보고서 제출 가능 규정 추가(안 제18조, 제19조)
- 나. 시·도등록문화재 제도 도입에 따른 등록문화재 관련 조문 변경(안 제34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및 제41조의2)
- 다.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 시,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규정(안 제35조)
- 라. 일반동산문화재 구체적인 범위 재정비(안 별표2)
- 마. 시·도등록문화재 등록 및 말소 시 보고사항 규정(안 제51조)

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9. 8. 28.
- 마감일자 : 2019. 10. 8.

- 포장재 재질 구조 개선을 유도하고자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 16083호, 2018. 12. 24., 일부개정, 2019. 12. 25. 시행)에 따라 제조 수입 판매 중단명령 대상 제품 중 불가피하게 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가 필요할 경우 판매중단 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사유, 과징금 부과 절차 등을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활용실적 인정 등과 관련하여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 판단기준, 절차 규정신설(안 제7조의2)
 - 1) 현재 제조기술로 개선이 불가능 하거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이 우려되는 경우 등 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의 기준을 마련하고, 부과 및 수납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
- 나. 재활용실적 인정기준 신설(안 별표5의2)
 - 1) 제품 포장재 품목을 주 포장용도, 형태, 기능 등 재질의 특성 및

회수 재활용 체계가 유사한 5가지 재질군으로 묶어 운영

6.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9. 8. 28. ● 마감일자 : 2019. 10. 8.
- 포장재 재질 구조 개선을 유도하고자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6083호, 2018. 12. 24., 일부개정, 2019. 12. 25. 시행)에 따른 포장재의 재질·구조 평가와 개선명령 및 제조·수입·판매 중단명령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포장재의 재질·구조 평가 및 표시 관련 세부 절차 신설(안 제3조의3, 안 제3조의4)
 - 1)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평가 후 한국환경공단의 확인을 받고 이를 표시하는데 까지 구체적 절차 및 준수사항을 정함
 - 나. 개선명령 및 제조 수입 판매 중단명령 세부 절차 신설(안 제3조의5, 안 제3조의6, 안 제3조의7)
 - 1) 개선명령 전 사전통지를 의무화하고 개선명령 및 개선기간 연장, 제조 수입 판매 중단명령과 관련한 세부 절차 및 준수사항을 정함

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9. 8. 28. ● 마감일자 : 2019. 10. 7.
- 적극적고용개선조치 대상 전체 사업장에 직종별·직급별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을 추가 제출하는 내용의 법 제17조의3 제2항, 제3항, 제5항이 적용 예정임에 따라 관련 규칙의 조문 및 제출 서식 등을 정비하고자 함. 또한, 사업장의 자료 작성 부담 경감 등을 위해 남녀 근로자 현황 등의 산정 방법을 변경하고, 이에 따라 자료 제출 일자도 변경(매년 3월 31일→ 매년 4월 30일)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직종별·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 외에 ‘임금현황’을 추가 제출하게 됨에 따라 관련 조항 문구를 조정(근로자→ 근로자 및 임금)하고, 자료 제출 일자를 변경(안 제12조)
- 1) 사업장의 자료 작성 부담 경감 및 고용형태공시제 데이터(고용 형태별 근로자수) 연계 활용을 위해 근로자 현황 산정 방법을 변경(매월 근로자수 합의 평균→ 3.31. 시점 근로자 수)하고, 이에 따라 제출일자를 변경(매년 3월 31일→ 매년 4월 30일)
- 나. 적극적고용개선조치 부진사업장이 제출해야 하는 시행계획서의 제출 일도 매년 4월 30일로 통일하고, 내용 중 ‘남녀 근로자간 임금격차 분석’ 부분을 삭제(안 제11조, 제11조제1호의2 삭제)
- 1) 적극적고용개선조치 전체 사업장이 직종별·직급별 임금현황을 제출하게 됨에 따라 중복 등의 이유로 기존 부진사업장이 제출해야 하는 시행계획서 내용 중 ‘남녀 근로자간 임금격차분석’ 부분을 삭제
- 다. 같은 이유로 이행실적 보고서의 제출 일도 매년 4월 30일로 변경(안 제14조제1항)
- 라. 관련 제출 서식 등 정비(안 별지 제4호·제5호서식)

8.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9. 8. 29. • 마감일자 : 2019. 10. 2.

○ 주요내용

- 가. 의료급여 2종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의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률 특례 적용대상을 만 3세에서 만 5세로 확대하여 아동의료비 부담을 줄이고자 함.
- 나.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 라목의 요양병원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의 일반입원실의 2인실·3인실 입원료가 의료급여 적용 대

상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인실·3인실에 대해서도 병원과 한방병원 2인실·3인실과 동일한 본인부담률 및 본인부담상한제 제외 등을 적용하려는 것임.

9.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9. 8. 29.
- 마감일자 : 2019. 10. 8.

○ 주요내용

- 가. 의료급여법 제13조의 개정(' 19.10.24 시행)에 따라 ‘보장구’를 ‘보조기기’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함.
- 나. 돈보기, 망원경의 보조기기급여비를 지급 청구 할 때 의사의 보조기기 검수확인 절차를 폐지하여 보조기기 수급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함.
- 다. 보조기기 처방전 서식을 유형별로 분리하여 이용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1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9. 8. 29.
- 마감일자 : 2019. 10. 8.

-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을 직접 수행할 수 없는 치매환자를 위하여 치매안심센터의 장이 그 신청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비용 감액 기준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 운영 규정을 삭제하여 장기요양기관으로 통합 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치매안심센터의 장이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 대리 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를 정하고, 장기요양기관이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미가입기간 동안의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그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하며, 기존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운영을 위한 시설 인력기준을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위한 시설 인력기준에 포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치매안심센터의 장이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 대리 시 구비서류 규

정(안 제10조제3호 신설 및 별지 제1호의2서식, 제10호서식, 제10호의2서식, 제17호서식, 제18호서식, 제18호의2서식)

- 1) 법률 개정으로 치매안심센터의 장이 치매환자를 대리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을 대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대리 신청 시 구비서류 해야 하는 서류를 규정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함

나. 장기요양기관 시설 인력기준 조항 정비 (안 제23조, 별표1)

- 1) 법률 개정으로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조항이 삭제되고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기관으로 통합됨에 따라 기존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운영에 필요한 시설 인력기준을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필요한 시설 인력 기준에 포함하여 규정하고자 함

다.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기관에 대한 장기요양 급여비용 감액 기준 마련 (안 제37조의3 신설)

-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그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라. 기타 서식 정비(안 별지 제19호의2서식, 제23호서식, 제36호서식)

- 1) 알기 쉬운 법령 정비결과를 반영하는 등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서식의 일부 용어 문구를 수정하고자 하고자 함

11.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19. 8. 29.
- 마감일자 : 2019. 10. 8.

- 제3국 중계 수출용으로 수입되는 식물의 경우 수출국에서 식물검역증명서 발급이 어렵고, 밀폐 포장된 상태로 운송되는 등 검역위험도가 낮은 점을 감안하여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을 면제하는 한편, 수출입 목재열처리업의 지위승계 관련 신고 시 양도의 경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인감증명서를 제외하여 기업과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3국 중계 수출용 수입 식물을 추가(안 제10조 개정)

- 1) 제3국 수출용 식물을 밀폐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여 통관하지 아니하고 식물검역장소에서 검역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하게 보관하는 경우는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대상에서 제외
- 2) 제3국 수출용 화물에 대한 검역절차 완화가 필요하다는 관련 기업(기관)의 요구에 대응한 합리적인 대안 마련으로 기업 애로를 해소하는 한편 국제물류센터 사업 활성화와 투자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나.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양도를 통한 지위승계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인감증명서 제외(안 제46조의3 개정)

- 1) 수출입목재열처리업 지위승계 관련 양도의 경우 승계 받은 자가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하는 서류 중 인감증명서 제외
- 2) 인감증명서 이외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해 지위승계확인이 가능하므로 인감증명서 제출 요구를 폐지하여 민원불편 및 부담 해소

12.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9. 8. 29.
- 마감일자 : 2019. 10. 8.

○ 자동차전용도로 기반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에 대한 안전기준을 신설함으로써 안전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조기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자율주행시스템의 정의 신설(안 제2조)

- 1) 자율주행시스템과 이를 세분화한 부분 자율주행시스템, 조건부 완전 자율주행시스템, 완전 자율주행시스템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기준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고 신규로 도입될 자율주행기술에 대비함.

나. 자율주행시스템의 안전기준에 관한 별도의 장 신설(안 제3장의3 신설)

- 1) 신규로 도입될 자율주행기술에 대비하여 안전기준을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별도의 장을 신설함.

다. 자율주행시스템의 운행가능영역 지정 기준 마련(안 제113조)

- 1) 제작자가 도로 및 주행환경, 기상환경 등 안전과 관련된 사항 및 시스템의 작동한계 상황을 명확히 구분하여 자율주행시스템의 운행가능영역을 지정하도록 규정함.

라.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의 성능 기준 및 고장 시 안전을 위한 기준 신설(안 제113조의2 신설)

- 1)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에 적용되는 자동차로유지기능, 자동차로변경 기능 등에 대한 최소안전거리, 운전자모니터링, 운전전환요구, 비상운행 등 성능기준과 고장 시 안전 조치에 관한 기준을 도입함.

마. 운전자의 운전조작 가능여부 감지 기준 신설(안 제113조의2 신설)

- 1)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의 운전전환요구에 대비하여 운전자의 운전 조작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운전자모니터링시스템에 관한 기준을 도입함.

바. 자율주행시스템의 안전기준 도입을 위한 조문 정리(안 제117조 신설)

13. 국립항공박물관법 시행령 제정(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9. 8. 29.
- 마감일자 : 2019. 10. 8.

○ 항공문화와 항공산업을 체계적으로 발굴·보존·연구 및 전시함과 아울러 항공에 관한 비전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립항공박물관을 특수법인으로 설립하는 내용으로 「국립항공박물관법」이 제정(법률 제16490호, 2019. 8. 20. 공포, 2019. 11. 21. 시행)됨에 따라 기부금품의 접수, 수입·지출 결산의 보고 절차 및 국립항공박물관에 대한 운영평가의 기준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립항공박물관이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의 종류 등(안 제3조)

- 1) 국립항공박물관은 설립목적의 범위 내에서 운영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립항공박물관 입장, 전시관 관람, 시설 임대 및 항공 관련 체험시설의 운영 등을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당 수익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립항공박물관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수익사업의 사업계획을 보고하고, 실적서 및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함.

나. 기부금품의 접수절차(안 제6조)

- 1) 국립항공박물관은 기부금품을 투명하게 접수·관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기부자가 정한 용도로만 기부금품을 사용하도록 하며,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함.

다. 수입·지출 결산의 보고절차(안 제8조)

- 1) 국립항공박물관의 수입·지출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립항공박물관의 관장이 수입·지출결산서에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 보고서 및 공인회계사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회계감사의견서 등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국립항공박물관에 대한 운영평가의 실시방법(안 제14조)

- 1) 국립항공박물관의 경영 상태, 박물관자료의 수집·보존·관리 및 전시 등 사업 및 박물관 운영관련 대국민서비스 측면에서 국립항공박물관의 운영성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립항공박물관에 대한 운영평가를 하도록 하고, 운영평가 실시일 3개월 전까지 운영평가의 기본방향 및 대상 등을 국립항공박물관에 통보하도록 함.

14.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9. 8. 30.

● 마감일자 : 2019. 9. 10.

- 행정질서 확립 등의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을 지방행정제재금으로 변경하며 제명을 「지방행정제재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지방행정제재금의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지방행정제재금에 변상금을 추가하는 한편, 지방행정제재금등의 징수·관리 업무를 「지방세기본법」의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서 통합 처리하는 근거 규정을 마

련하고, 대금지급 정지를 납부증명서 제출로 개선하며, 압류해제 요건 추가, 신용카드 등 자동납부, 독촉장 납부기한 연장 등을 통해 납부자 권익 및 납부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세외수입금 명칭 변경 및 적용범위 조정

- 1) 행정질서 확립 등의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을 지방행정제재금으로 변경하며 제명을 「지방행정제재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지방행정제재금의 관리체계를 개선함.(안 제1조, 제2조제1호)
- 2) 지방행정제재금에 변상금을 추가하여 지방행정제재금의 적용범위를 조정함.(안 제2조제1호가목)

나. 지방행정제재금 관리체계 강화

- 1) 지방세정보통신망과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이 매우 유사함에도 별도 시스템으로 운영됨으로써 발생하는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행정제재금등의 징수·관리 업무를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서 통합 처리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2조제12호 삭제, 제2조제13호, 제20조, 제22조 삭제, 제25조 신설)
- 2)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에 대한 대금지급 정지 제도를 국세·지방세와 같이 납부증명서 제출 제도로 전환함.(안 제7조)

다. 납부자 권익 및 납세편의 증진

- 1) 독촉장 납부 기간을 연장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압류금지 금융재산을 압류하였을 경우 즉시 압류해제를 하도록 하는 요건을 추가하여 납부자 권익을 증진함.(안 제8조제2항, 제14조제2항제5호 신설)
- 2)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지방행정제재금등에 대한 신용카드·직불카드 자동납부 근거 규정 마련으로 지방행정제재금등의 납부편의성을 제고함.(안 제21조제4항 신설)

1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 예고일자 : 2019. 8. 30.
- 마감일자 : 2019. 10. 10.

- 가석방 또는 임시퇴원된 보호관찰 대상자의 개시 및 신고 시기를 가석방 또는 임시퇴원이 허가된 때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률이 정하는 바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 가석방 또는 임시퇴원 된 때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보호관찰 준수사항의 ‘삭제’를 추가하는 내용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313호, 2019. 4. 16. 공포·시행, 보호장구 규정은 10. 1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보호관찰 준수사항 관련 규정 등에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호관찰 대상자의 신고의무 관련 규정 정비

- 1) 법 제29조제1항 보호관찰은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가석방·임시퇴원된 때부터 시작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호관찰 대상자의 개시 및 신고 시기를 현행 “가석방 또는 임시퇴원이 허가된 때”에서 “가석방 또는 임시퇴원된 때”로 정비
나. 보호관찰 준수사항 ‘삭제’ 용어 추가

- 1) 보호관찰 대상자가 건전한 생업 등의 종사로 부과된 준수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 준수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준수사항의 추가·변경에 ‘삭제’를 추가하는 한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규정에 반영

16.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 예고일자 : 2019. 8. 30.
- 마감일자 : 2019. 10. 10.

-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효율적인 계호를 위해 보호대(帶)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313호, 2019. 4. 16. 공포·시행, 보호장구 규정은 10. 1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보호대(帶)의 사용방법을 정하는 한편, 갇새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기준 서식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

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임상심리사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호관찰 준수사항 ‘삭제’ 용어 추가

- 1) 보호관찰 대상자가 건전한 생업 등의 종사로 부과된 준수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 준수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준수사항의 추가·변경에 ‘삭제’를 추가

나. 보호장구 중 ‘보호대(帶)’의 사용방법을 추가

- 1)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효율적인 계호를 위해 보호대(帶)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보호대(帶) 및 그 사용방법을 보호장구별 사용방법 서식에 반영

다. 타법개정에 따른 법률 제명 등 정비

- 1) 「舊 정신보건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타법개정으로 반영되었으나, 갱생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기준 서식에는 반영되지 않음에 따라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임상심리사”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임상심리사”로 정비

17.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 예고일자 : 2019. 8. 30.
- 마감일자 : 2019. 10. 10.

- 국가무형문화재 전통기술 분야는 작품이 완성되기까지 장기간의 복잡한 공정이 소요되어 단시간의 공개행사를 통해 기술을 온전히 보여주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위험한 작업도구나 불을 사용하는 경우 관람객 안전사고 및 화재 위험 등에 노출되어 있어 전통기술 분야의 공개는 전시에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사항임

○ 주요내용

가. 전통기술 분야의 공개행사를 전승공예품의 전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조항 신설(안 제25조제2항)

1) 해당 종목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전승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년도 공개행사 이후 제작된 작품 및 해당 작품의 제작과정을 촬영한 영상을 포함하도록 규정

18.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9. 8. 30.
- 마감일자 : 2019. 10. 10.

○ 물관리 일원화 조치에 따른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 제15624호, 2018. 6. 8. 공포·시행)으로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 사무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소관이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변경되는 등 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제도, 건설·관리 사무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됨. 이에 따라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댐주변친환경보전법」이라 한다)의 소관을 환경부로 변경하는 법률개정안이 통과(법률 제 호, 2019. 9. . 공포·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인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소관부처를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변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계획 수립대상 지역의 판단, 주민의견 수렴,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 지정 등의 고시,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실시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준공검사, 행정처분의 고시, 권한의 위임 등의 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함.

19.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9. 8. 30. • 마감일자 : 2019. 10. 10.
- 한국학중앙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시 500만원 이하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국학중앙연구원법」 개정(2019.8.20.공포 2020.2.21.시행)
- 주요내용
 - 가. 법 제11조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안 제15조)
 - 1) 법 제11조의 과태료 상한액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이 영의 제15조 (별표)과태료의 부과기준 상향 조정

20.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9. 8. 30. • 마감일자 : 2019. 10. 10.
- 학교자치 확대에 교육주체인 학부모의 학교참여 요구는 지속 증대하고 있으나 제도상 제약으로 학교자치기구 임원 선거에 투표참여율이 저조함. 이에, 학교운영위원회 임원 선출방법에 전자투표를 도입하여 학부모의 투표참여 편의를 제고하고 학교운영위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방법에 전자투표 신설(안 제59조 제2항)
 - 1)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거 방법을 기존의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외에 전자투표 신설

21.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9. 9. 2. • 마감일자 : 2019. 10. 14.
-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이 특허권을 조기에 확보하여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하도록 초기창업기업의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신청료를 감면하고 지식재산금융의 활성화를 위해 은행에 대한 연차등록료를 감면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지식재산금융 활성화를 위해 지식재산금융과 관련된 경우 은행에 대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특허권 등에 관한 연차등록료를 50% 감면 제도를 신설(안 제7조제2항제9의4호)
- 나.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 자신이 한 특허출원에 대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우선심사신청료를 70% 감면 제도를 신설(안 제7조제2항제11호)
- 다. 중소기업 등이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특허출원의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우선심사신청료를 감면하도록 개정(안 제7조제2항제10호)
- 라. 4년차분부터의 특허료 등에 대하여 3년분 이상을 일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특허료 등의 총액에서 100분의 10을 차감하도록 개정(안 제8조제11항)
- 마. 행정정보공동이용망(G4C)의 확대 적용으로 계좌번호의 유효성 검증을 위한 통장사본 제출을 생략하여 민원서류 감축(안 별지 제3호서식)

2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 예고일자 : 2019. 9. 2.
- 마감일자 : 2019. 10. 14.

-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의 품질관리 등을 위해 생산적합성조사에 필요한 조사항목과 적합기준을 시장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된 조사기준을 산림청장 고시로 개정하고, 규제의 재검토 대상인용 조문을 변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생산적합성조사 기준을 산림청장이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안 제17조의3 제2항 및 관련 별표 2)
 - 1)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을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토양, 종묘 또는 종자가 생산에 적합한지에 대해 생산적합성조사를 받도

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생산적합성조사기준이 별표 2에 규정되어 시장 여건에 맞게 조사항목이나 기준 등을 추가·변경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적기에 반영되기 어려움. 이에,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 생산에 필요한 토양, 종묘 및 종자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인 생산적합성조사 기준을 산림청장이 고시로 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나. 규제의 재검토대상 인용 조문 변경(안 제26조의2제2의2호)

- 1) 별표 2의 생산적합성조사 기준을 산림청장이 고시함에 따라 이에 맞게 인용 조문을 삭제함

23.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9. 9. 2.

● 마감일자 : 2019. 10. 14.

-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 현황 관리 및 연수 종료 후 사후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및 자료의 제출 요청과 관련하여 데이터베이스에 포함해야 할 정보 범위, 구축 방식 및 자료의 제출 요청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의료 해외진출 기관이 신고 이후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 사후관리 등(안 제15조의2 신설)

- 1)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및 연수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관련 부령으로 위임된 세부사항 규정

나. 의료해외진출기관 신고내용 변경통지 서식 마련

- 1) ‘의료 해외진출 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에 변경신고내역란 추가

24.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9. 9. 2.

● 마감일자 : 2019. 9. 27.

- 분양신고 대상을 30실 이상의 생활숙박시설까지 확대하고, 분양신고

시 부동산개발업 등록 확인 절차를 신설하는 등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시행령 이 개정됨에 따라 분양신고서 양식 등에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분양광고 항목 추가에 따른 조문정리(안 제6조)

나. 분양신고서 양식 보완(안 별지제1호서식)

1) 분양신고서 양식의 안내사항에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함(신고인 제출서류 추가 및 법 적용범위 변경)

2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9. 9. 3.

● 마감일자 : 2019. 10. 14.

○ 타 신기술(건설신기술)과의 형평성 및 환경신기술 활성화 지원책으로 신기술 활용실패에 대한 면책 조항 신설 및 신기술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환경신기술 적용 시 발주청 계약사무 등 담당자에 대한 손실면책 조항 신설(안 제7조의2제7항 신설)

나.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최초 유효기간을 5년에서 8년으로 확대(안 제7조의3제1항)

2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9. 9. 3.

● 마감일자 : 2019. 10. 14.

○ 지자체 등 환경신기술 사용기관의 사후평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사후평가 기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환경신기술 또는 기술검증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제출(안 제6조의2제2항)

나. 환경신기술 또는 기술검증의 성능 및 경제성 등에 대하여 매년 7월 31일까지 사후평가를 실시(안 제6조의3제1항)

27.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 예고일자 : 2019. 9. 3.
 - 마감일자 : 2019. 10. 14.
- 현행 계절근로 체류자격은 90일까지만 취업이 가능한 별표 1(단기체류자격) 단기취업(C-4) 체류자격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농·어촌에서 인력 부족 등의 사유로 지속적으로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 연장을 요청하고 있어, 농·어촌 인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최대 5개월까지 취업이 가능한 계절근로(E-8) 자격을 별표 1의2(장기체류자격)에 신설하려는 것임.

28.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
(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9. 9. 3.
 - 마감일자 : 2019. 9. 30.
- 개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 16309호, 공포 2019. 4. 16., 시행 2019. 10. 17.)」 제14조의2의 위임에 따라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교원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법률전문가 등이 포함된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법률지원단 운영 목적 및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1) 개정 법에서 위임된 국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및 교육활동 분쟁에 대한 교원의 법률 상담 지원 등 법률지원단 운영 목적 및 업무를 정함
- 나. 단원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 1) 당연직 단원 2명 등 7명 이내 단원을 구성하되, 위촉직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도록 임기를 정함
- 다. 상담에 대한 자문료 등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1) 변호사 자격을 가진 위촉직 단원에게 법률 상담을 받을 경우 소정의 자문료, 기타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하는 지급 근거 마련

29.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9. 9. 4.

• 마감일자 : 2019. 10. 15.

○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하여 배출부과금의 부과 대상 대기오염물질에 질소산화물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9452호, 2018.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 총량관리 사업장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을 면제하도록 하던 오염물질과 동일하게 질소산화물에 대해서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2020년 4월 3일 이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도록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질소산화물에 대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총량관리사업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질소산화물에 대한 기본부과금 및 초과 부과금을 면제(안 제20조제1항제3호)

30.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9. 9. 4.

• 마감일자 : 2019. 10. 15.

○ 공공업무의 철저한 기록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 증대, 급속한 기록관리 환경 변화, 기록관리현장의 목소리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개정함으로써 입법 미비 사항 및 그간의 운영상 문제점 등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공기록물 생산·관리의 내실화

- 1) 정의 규정 정비(안 제2조)
- 2) 공공기관의 범위 확대(안 제3조)
- 3)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관리 및 기록물 부기·정정 근거 마련(안 제4조)
- 4) 기록화 및 기록관리 대상 정비(안 제16조, 제21조)
- 5) 주요 기록물 생산의무 대상 확대(안 제18조, 제19조)
- 6) 기록물 보존기간 책정 기준 정비(안 제26조)
- 7) 특수기록관 비공개기록물 이관시기 연장제도 개선(안 제41조)
- 8) 기록물 평가·폐기 규정 보완(안 제43조, 제54조)
- 9) 행정박물 재사용 규정 삭제 및 기록물 대여규정 신설(안 제57조,

안 제74조의3)

나. 공공기록물 관리 기반 강화

- 1) 기록관 설치 기준 정비(안 제10조, 제11조)
- 2) 기록물관리기관 시설·장비 기준 정비(안 제60조)
- 3)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 정비(안 제78조)

다. 전자기록관리 체계 구축

- 1) 전자기록물 진본확인 방식 유연화(안 제32조, 제36조, 제40조, 제50조)
- 2)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방안 마련(안 제57조의2 신설)

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기록관리 개선

- 1) 지방자치단체 기록물 반환 근거 신설(안 제8조의2 신설)
- 2) 기록물 생산현황통보 방식에 관한 권한 변경(안 제33조, 제42조)
- 3)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서고배치 기준 정비(안 제48조)

3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9. 9. 4.
- 마감일자 : 2019. 10. 14.
- 2018년 12월 「장애인연금법」이 개정되어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인 ‘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이상 20세 이하 중증장애인’이 2020년 1월 1일부터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자 요건을 정비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이상 20세 이하 중증장애인’이 장애인 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장애아동수당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안 제30조제2항제1호)

3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9. 9. 4.
 - 마감일자 : 2019. 10. 16.
- 「중앙-지방 기능조정 TF」를 통해 지방이양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 및 지급 제외 대상 사업 범위를 변경하고, 취약계층 아동 지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책임 역할 강화를 위해 현행 정액보조로 지원 중인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운영 사업

의 기준보조율을 정률로 변경하여 지방재정을 투입하도록 함으로써 아동복지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앙-지방 기능조정 TF」를 통해 지방이양 사업 확정(시행령 [별표1] 및 [별표2] 개정)

- 1) '19.3월 「중앙-지방 기능조정 TF」를 통해 국가균형특별발전회계 포괄보조사업을 중심으로 지방이양사업을 확정함에 따라 시행령 별표1의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를 변경하고, 지방이양사업은 별표2의 보조금 지급 제외대상 사업에 명시함.

나. 서울과 지방의 재정자립도, 신규 추가부담정도를 고려하여,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운영의 서울과 지방 대상 기준보조율을 조정(시행령 [별표1] 제96호 개정)

- 1)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운영 사업(아동복지법 제37조)에 대해 서울특별시의 경우 50%, 그 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80%를 지원함.

3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9. 9. 4.
- 마감일자 : 2019. 10. 14.

○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인과 그 유자녀, 피부양가족의 생계유지, 학업 또는 재활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피해자 지원사업을 추진 중으로,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현실화하는 한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자(안 제21조제1항)

- 1)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생활형편 검토 대상을 본인으로 하여 검토 대상의 폭을 확대하고자 함.

나. 지원의 기준 및 금액,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안 제22조제1항 및 제23조제3항)

● 예고일자 : 2019. 9. 4.

● 마감일자 : 2019. 10. 14.

○ 현재 지침에 규정된 제3종시설물의 대상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부실 안전점검 등을 예방하기 위해 부실점검을 한 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한국시설안전공단이 대행하는 정밀안전진단 대상 시설물을 정할 때 고려할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긴급안전점검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일부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하고 시설물 안전점검등에 건설신기술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등 그동안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제3종시설물 범위를 대통령령에 규정(안 제4조, 별표 1의2 신설)

1) 현재 지침(고시)에 규정된 제3종시설물의 대상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상향하여 규정(제1종·제2종 시설물은 시행령에서 규정)

나. 부실한 안전점검 수행자에 대한 처벌 강화(안 제14조, 별표12 15)

1) 평가결과 부실의 정도를 매우불량, 불량 및 미흡으로 구분하여 과태료 및 영업정지 처분기준을 강화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진단 대행시설물을 정할 때 고려할 사항 규정(안 제21조)

1)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안전공단만 안전진단을 전담하게 하는 시설물을 정할 때 시설물의 규모, 중요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5년마다 시설물 선정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의무화

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일부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안 제43조)

1) 국토교통부장관의 긴급안전점검의 실시 요구, 실태점검, 과태료 부과 등의 권한 일부를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

마. 과태료 부과권자 구체화(안 제47조)

1) 과태료 부과권자를 관리·감독범위에 따라 구체화

바. 시설물 안전점검에 신기술 활용 활성화(안 별표10)

1) 시설물의 안전점검 등을 도급받은 수급인이 하도급을 할 수 있는 전문기술 분야에 건설신기술을 추가

사. 서류제출 방법에 전자문서 추가(안 제3조제3항, 제13조제2항)

1) 시설물관리계획, 안전점검등의 결과보고서 제출방법에 전자서류를 포함

3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9. 9. 5.
 - 마감일자 : 2019. 10. 15.
-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시정명령을 받은 자동차제작자가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하고, 결함확인검사 부적합 판정 시 반드시 결함시정명령을 내리도록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결함시정계획서 미제출 또는 부실 제출 시, 과태료 부과 및 교체·환불·재매입 명령(제51조, 제53조, 제90조, 제94조 개정)
- 1) 결함시정명령을 받은 자동차제작자는 결함시정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적정여부를 승인을 받아야 하나, 기한(45일) 내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함에 대한 제재수단 마련
- 나. 결함확인검사 부적합 판정 시, 결함시정명령 처분(제51조제4항 개정)
- 1) 결함확인검사 부적합 판정 시 반드시 결함시정명령을 내리고, 제작자의 자발적 시정은 “부적합 판정 이전”에만 가능토록 한정

37.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9. 9. 5.
 - 마감일자 : 2019. 10. 15.
- 9급 공채 제2차 시험과목을 전문과목으로 필수화하여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7급 공채 한국사과목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대체를 통해 수험생 부담을 완화하며,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 근무성적평정과 경력평정 비율의 조정범위 확대 등을 통하여 지자체 인사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9급 공채 시험과목 개편 (안 제50조의2삭제, 안 별표9, 안 별표10삭제)
- 1) 행정직군의 제2차시험 선택과목에 포함된 사회·과학·수학 과목 및 일반행정 또는 기업행정, 숙기직류를 제외한 행정직군 내 다른 직류에 포함된 행정학개론 제외
 - 2) 선택과목 간 난이도 조정을 위해 도입된 조정점수제 폐지

나. 7급 공채 한국사과목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대체(안 제46조, 안 제50조)
다. 5급 이하 성과평가시 근무성적 및 경력평정비율 조정범위 확대
(안 제32조)

1)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 근무성적평정과 경력평정의 조정범위를 20%까지 확대

라. 기타 인사운영상 미비점 개선(안 제9조의2, 안 제27조, 안 제62조)

1) 필수보직기간의 제외기간 명시, 인사위원회 여성위원 위촉관련
규정 명확화 및 공채시험 등 시험공고 시 공고사항 개선

38.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안) (인사혁신처)

- 예고일자 : 2019. 9. 5. ● 마감일자 : 2019. 10. 15.

○ 공무원의 직무수행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유인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직무와 관련하여 소송을 당하는 공무원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을 골자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무원 책임보험 도입 근거 마련

1) 운영기관의 장이 직무수행으로 민·형사상 피소(被訴) 등을 당하는 소속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소송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7조의2 제1항)

나. 공무원 연금공단의 보험가입 업무 대행근거 마련

1) 각 운영기관의 보험계약 체결 등에 관한 업무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공무원연금공단이 대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7조의2 제2항)

39.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 예고일자 : 2019. 9. 5. ● 마감일자 : 2019. 10. 15.

○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등 통합운영 신청조건을 완화하고, 품질 책임자 자격요건을 확대하며, 의무기록 등 데이터를 사용한 임상시험 절

차를 개선 하는 한편, 구두 불법광고 등의 처분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40.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 예고일자 : 2019. 9. 5. • 마감일자 : 2019. 10. 15.
- 보호소년 등 또는 그 보호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원장이 재·퇴원증
명서 등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재·퇴원증명서 발급 사무를 처리
하기 위하여 민원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
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재·퇴원증명서 등의 발급 근거 규정 마련(제87조의2 신설)
 - 1) 원장은 보호소년등 또는 그 보호자등이 신청하는 경우 재·퇴원
증명서 등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함.
 - 나. 고유식별정보 처리 규정 정비(제92조의2제1항제8호 신설)
 - 1) 재·퇴원증명서 발급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인의 주민등
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41.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 예고일자 : 2019. 9. 5. • 마감일자 : 2019. 10. 15.
- 보호소년 등 또는 그 보호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원장이 재·퇴원증
명서 등을 발급하는 데에 필요한 보호소년용 재·퇴원증명서 및 위탁
· 유치소년용 재·퇴원증명서 서식을 추가하려는 것임.

4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9. 9. 5. • 마감일자 : 2019. 10. 15.
- 현재 생애주기 비용 관점의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가 설계단계에
서는 활성화되어 있는 반면 시공 단계에서는 검토가 미흡하여, 여건변

화에 따른 발주청의 추가 검토를 의무화하고, 발주청 주관 외 시공사가 주관하여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발주청 주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대상 추가(제7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1) 설계 후 발주까지 수년이 걸리는 경우 여건변화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의무화하고, 발주청 판단에 따라 필요시 추가 검토할 수 있도록 개정

나. 시공사 주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실시(안 제75조제2항 및 제5항)

1) 시공자가 성능개선, 기능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발주청에 대해서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결과의 제출 의무화

4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9. 9. 5.

● 마감일자 : 2019. 10. 16.

○ 초·중등학교의 학교규칙을 학교 교육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학교자율로 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 예시를 삭제하고 유사한 의미의 문구를 통합하는 등 입법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학교규칙 기재사항에 관한 조항 중 구체적 예시를 삭제하고 유사한 문구를 통합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제7호)

44.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9. 9. 6.

● 마감일자 : 2019. 9. 26.

○ 의료기관이 잔여검체를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할 수 있는 절차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2019. 4. 23. 공포, 10. 24. 시행)에 따라 신설되어 해당 절차에 따른 위반행위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 중 법률 상한액에 비해 시행령의 부과금액이 과소한 부과기준을 조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의료기관 및 인체유래물은행의 잔여검체 관리 의무위반에 따른 과태료 기준 규정(별표4 하~더목)

1) 의료기관 및 인체유래물은행이 익명화하지 아니하고 잔여검체를 제공하거나, 인체유래물은행이 잔여검체의 익명화 방안이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 지침을 마련하지 아니하거나 개인정보 관리 및 보안을 담당하는 책임자를 두지 아니한 경우, 의료기관이 유상으로 잔여검체를 제공한 경우의 과태료의 세부 기준을 정함

나.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 순서에 맞추어 부과금액 조정(별표4 자목, 카목)

45.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9. 9. 6.

● 마감일자 : 2019. 9. 26.

○ 의료기관이 잔여검체를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할 수 있는 절차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2019. 4. 23. 공포, 10. 24. 시행)을 통해 신설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구체적 내용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의료기관이 피채취자에게 서면고지 해야하는 내용 구체화 및 법정 서식 마련(안 제40조의2)

나. 피채취자가 거부의를 표시할 수 있는 절차 구체화 및 법정 서식 마련(안 제40조의3)

다. 의료기관이 인체유래물은행에 잔여검체 제공 시 요구할 수 있는 경비 구체화(안 제40조의4)

라. 의료기관이 인체유래물은행에 잔여검체 제공 전 기관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공계획의 내용 구체화 및 제공에 관한 기록 작성을 위한 법정 서식 마련(안 제40조의5)

마. 인체유래물은행 장이 잔여검체 관리 시 기존 인체유래물 관리규정 준용(안 제40조의6)

바. 정당한 이유없이 잔여검체를 사용, 폐기, 손상한 경우 업무정지 기준 구체화(별표6)

4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9. 9. 6.

• 마감일자 : 2019. 10. 16.

- 외국인근로자가 작성하는 표준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등을 사업장의 근로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외국인근로자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항목 등을 개선하고, 고용허가제 관련 민원서류 중 업무처리에 활용도가 높지 않은 작성 항목 등을 삭제하고, 복잡한 작성 서식을 단순화하여 민원인 편의 제고 및 업무담당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47.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 예고일자 : 2019. 9. 9.

• 마감일자 : 2019. 10. 21.

- 「화장품법」(법률 제15488호, 2018.3.13. 공포, 2020.3.14. 시행) 개정으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자격시험 시행에 필요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화장품법」(법률 제15947호, 2018.12.11. 공포, 2019.12.12. 시행) 개정으로 과징금의 상한액이 현행 5천만원에서 10억원으로 조정되고, 가격표시 위반 시 현행 벌칙을 부과하도록 한 것을 과태료로 부과할 수 있도록 완화됨에 따라, 법률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아울러 법제처의 과징금 부과체계 개선 권고에 따른 적정과징율을 반영하여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금액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과징금 상한액 조정 및 적정과징율에 따른 과징금 금액 정비(안 제11조 및 별표 1 개정)

1) 「화장품법」(법률 제15947호, 2018.12.11. 공포, 2019.12.12. 시

행) 개정으로 과징금 상한액이 현행 5천만원에서 10억원으로 조정되고, 법률에서 현행 과징금 부과체계 개선을 위해 적정과징율에 따른 과징금 금액 조정을 권고함

- 2) 이에 법률에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적정과징율에 따른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금액을 조정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 및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무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규정에 추가(안 제15조 개정)

- 1) 「화장품법」(법률 제15488호, 2018.3.13. 공포, 2020.3.14. 시행) 개정으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이 신설됨
- 2) 이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위하여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규정에 동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자격시험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다. 가격표시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조항 신설(안 별표 2 개정)

- 1) 「화장품법」(법률 제15947호, 2018.12.11. 공포, 2019.12.12. 시행) 개정으로 가격표시 위반 사항에 대하여 현행 벌칙을 부과하던 것을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완화됨
- 2) 이에 법률에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과태료의 세부 부과금액을 정하는 등 제도 시행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것임

4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 예고일자 : 2019. 9. 10.
- 마감일자 : 2019. 10. 21.

○ 창업사업에 지원하는 창업자의 서류준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행정서류를 간소화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안 제18조)

- 1) (현황) 창업진흥원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으로 지정(‘16.10.17)되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
- 2) (개정내용)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조항(제18조)을 신설하여 직접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명시하고 그 밖의 필요한 서류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함

- 3) (기대효과) 창업진흥원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활용해 서류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창업자의 서류준비 부담 최소화

나. 창업자 부담금 면세 신청 시 첨부서류 삭제(안 별지 제9호서식)

- 1) (현황) 창업자의 창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확인하였으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도 창업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첨부서류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 2) (개정내용) 별지 제9호 서식에서 제출서류 목록 중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삭제함
- 3) (기대효과) 창업자의 서류준비 부담 완화

49.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외교부)

- 예고일자 : 2019. 9. 10.
- 마감일자 : 2019. 10. 19.

○ 재외국민 등록사항의 정비,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의 전자적 교부, 귀국 신고 및 등록말소 제도 도입 등의 내용으로 「재외국민등록법」이 개정(법률 제16026호, 2018. 12. 24. 공포, 2019. 12. 25. 시행)됨에 따라, 귀국신고 및 등록말소의 세부 운영방안을 신설하면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등록사항, 이동 및 변경신고 사항의 확인절차를 정하는 한편, 우편, 모사전송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하는 신청 또는 신고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폐수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정비(안 별표22 제2호사목)

- 1) 폐수 위·수탁 시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에 따라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미입력 등 위반행위 시 행정처분 기준을 정함

50.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외교부)

• 예고일자 : 2019. 9. 10.

• 마감일자 : 2019. 10. 19.

○ 재외국민 등록사항의 정비,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의 전자적 교부, 귀국 신고 및 등록말소 제도 도입 등의 내용으로 「재외국민등록법」이 개정(법률 제16026호, 2018. 12. 24. 공포, 2019. 12. 25. 시행)됨에 따라, 귀국신고서 서식을 신설하는 한편, 각종 신청 또는 신고 서식을 정비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등록사항을 확인할 수단이 열거되지 않은 경우의 확인 절차 (안 제2조의2)

1) 재외국민등록을 하기 위하여 국적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나, 조선적 재일동포 등 특수한 경우에는 기본증명서 등을 통해 국적을 행정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바, 재외국민등록을 위한 국적 확인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재외공관의 체계적인 국적확인 업무가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음.

2) 재외공관 사정에 따라 대면면담 등을 통해 국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현행 절차를 구체화하여 명시함.

나. 관련 서식의 정비 (안 제5조의2 신설, 별지 제1호 내지 6호 서식)

1) 재외국민등록 신청서, 재외국민등록부,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신청서, 재외국민등록의 변경·이동 신고서 등 각종 서식을 정비하면서, 「재외국민등록법」 개정으로 도입된 귀국신고의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재외국민등록자의 귀국신고서를 신설함.

5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

• 예고일자 : 2019. 9. 10.

• 마감일자 : 2019. 10. 21.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

는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하고 시행령을 통해 보증을 면제하는 사유 등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해 일부 면제 사유를 삭제하거나 기존 면제 사유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52.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 예고일자 : 2019. 9. 11.
 - 마감일자 : 2019. 10. 21.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당해 연도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 수립·제출 시 전년도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나,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과 추진실적 제출기한이 동일하여 추진실적 평가결과 반영에 어려움이 있어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의 원활한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현행 추진실적 제출기한을 조정하고,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운영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구성·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제출기한을 앞당겨 조정하고자 함 (안제5조제1항·제2항·제3항)
 - 나. 관계행정기관과 식품안전통합망 운영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협의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안 제17조의3 제3항·제4항)

5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 예고일자 : 2019. 9. 11.
 - 마감일자 : 2019. 10. 4.
- 식품접객영업을 하려는 자 또는 식품접객영업자가 식품영업허가·신고 또는 변경허가·신고 시 제출하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앞으로는 영업허가·신고관청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개선하고,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단체급식에 대하여 나트륨, 당류

등 영양성분의 과잉섭취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사업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식품영업허가·신고 또는 변경허가·신고 시 식품접객영업자가 제출하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함(안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별지 제41호서식)
- 나. 지방자치단체장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단체급식에 대하여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6조의3 신설)

54.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9. 9. 11.
- 마감일자 : 2019. 10. 21.

○ 「한-영 자유무역협정」이 정식서명(' 19.8.22.)됨에 따라 협정 대상국가인 영국을 기존 관련 조문에 추가

○ 주요내용

- 가. 「한-영 자유무역협정」이 정식서명(' 19.8.22.)됨에 따라 협정 대상국가인 영국을 기존 관련 조문에 추가

55.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 예고일자 : 2019. 9. 11.
- 마감일자 : 2019. 10. 25.

○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의 손해평가인 자격요건이 다른 재해보험의 손해평가인 자격요건에 비해 강화되어 있어, 이를 동일한 수준으로 개정하

여 양식수산물 손해평가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산림병해충방제 사업에 대하여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과 나무병원의 업무영역이 중복되는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나무병원의 등록기준을 수목진료 대상(산림내, 외)에 따라 적절하게 정하고자 하며, 나무의사 등 양성기관의 위반유형에서 ‘시정명령을 기한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삭제하여 처분종류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등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56.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9. 9. 11.
- 마감일자 : 2019. 9. 23.

○ 흡연은 폐암, 심장병 등의 주요 원인으로 흡연자의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간접흡연에 의해 다른사람의 건강에도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의료비 증가, 화재위험, 간접흡연에 따른 이웃간 갈등 등 사회적으로 국민들에게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 정부는 흡연을 감소를 위해 WHO(세계보건기구) FCTC(담배규제기본협약)에 따라 가격인상,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금연구역 확대 등 담배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담배업계의 담배 광고 및 판촉 행위도 증가하고 있어 정책효과를 저해하고 있음. FCTC 제13조제4호는 담배 광고 및 판촉, 후원행위에 대한 포괄적 금지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현행 「담배사업법」도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및 도매업자가 소매인을 대상으로 행하는 담배 판촉행위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적용대상을 담배제조사 등이 직접 하는 행위로 한정함에 따라 제조사 등이 직접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촉행위를 실시하거나,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는 전자담배용 흡연 전용기구를 이용한 판촉행위, 담배 유사제품에 대한 판촉행위, 제3자를 내세운 우회적 판촉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정책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담배, 담배 유사제품, 전자담배용 흡연 전용기구 등의 담배제품의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일반인에게 금품이나 편의를 제공하는 판촉행위, 담배가 아닌 담배 유사제품을 담배처럼 광고하거나 담배제품 이용정

보를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500만원 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재 법을 우회하여 성행중인 담배제품 판촉행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금연정책의 효과를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57.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58.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법무부)

왔음. 그러나 물가상승 등 경제상황 변화와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2018. 1. 7. 시행)의 적용 상한 벌금액이 500만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봉사 신청 가능한 벌금형의 금액을 상향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제 사회봉사 신청 가능한 벌금형의 금액을 상향함으로써 경제적 이유로 벌금을 못내는 사람의 노역장 유치로 인한 구금을 최소화하고 생계곤란 벌금 미납자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에서 위임한 사회봉사 신청 가능한 벌금형의 금액을 현행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함(안 제2조)

59.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

- 예고일자 : 2019. 9. 11.
- 마감일자 : 2019. 9. 26.

○ 국선변호인 선임 대상자를 미성년자, 농아자,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 및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체포된 피의자(이하 “체포피의자”)로 확대하여, 체포피의자의 형사절차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 체포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인(이하 “피의자국선변호인”)선정 등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구조’의 정의 규정 일부 수정(안 제2조)

- 1) 현행 「법률구조법」은 ‘법률구조’의 정의를 ‘법률상담,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으로 정하고 있음
- 2) ‘법률구조’ 정의에 ‘형사절차상 변호인의 조력’을 추가하여, 공단이 피의자국선변호인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나. 피의자국선변호인 운영 관련 사항 규정(안 제19조의2)

- 1) 공단은 피의자국선변호인을 선발·위촉하고, 매년 피의자국선변호인 명부를 작성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함

- 2) 공단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체포피의자의 체포 통지를 받은 경우 피의자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이를 해당 수사기관과 체포피의자에게 고지하도록 함
- 3) 피의자국선변호인의 업무 독립성을 보장하고, 그 업무수행 내용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접견, 피의자신문 참여, 의견 개진 등의 사항으로 정하도록 함
- 4) 피의자국선변호인의 자격, 명부 통보 방식, 선정, 고지 절차 및 피의자국선변호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피의자국선변호운영위원회 신설 및 업무범위 등 규정(안 제19조의3 및 안 제19조의4)

- 1) 피의자국선변호인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단에 피의자국선변호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사무국을 두도록 함
- 2) 피의자국선변호인 선발·평가 등 운영위원회의 업무범위 및 인적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라. 피의자국선변호운영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규정(안 제19조의5)

- 1) 운영위원회의 심사가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 위원들의 독립적인 업무수행 보장 규정 신설

마. 피의자국선변호 비용 부담 규정(안 제19조의6)

- 1)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에 따라 국선변호를 받은 피의자에게 국선변호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
- 2) 다만 미성년자·농아자,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체포된 자로서 경제적 곤란을 소명한 경우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의자에서 제외

60.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19. 9. 11.
- 마감일자 : 2019. 10. 21.

○ 개물림 사고 발생 등에 따른 반려동물 소유자의 안전조치 의무 강화 필요성에 따라 반려견 동반외출 시 목줄의 길이를 설정하고, 농장동물의 복지 환경 개선을 위해 축종별로 세부 사육·관리 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관리 강화를 위해 시설·인력 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동물 외출 시 목줄 길이 설정(안 제12조제2~3항)

- 1) 목줄 길이를 2미터이하로 명확히 정하고, 공동주택 등의 건물내부 공용공간에서는 소유자가 동물을 안거나 목걸이를 잡도록 규정

나. 동물사체처리 방식에 수분해장 방식 추가 등(안 제36조제1호)

- 1) 동물장례업체의 장례(화장·건조·수분해)증명서 발급 및 장례 증명서 지자체 제출(등록동물 경우) 의무화(별표10)

다. 동물 생산·판매·수입·위탁관리업 대상 영업 범위 명확화(안 제36조제2~4호, 제6호)

- 1) (생산·판매·수입업) 허가·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연간 판매금액 15만원 이하로 규정
- 2) (위탁관리업) 등록 대상营业을 1일 2회 또는 1일 1회 3마리 이상을 위탁 받아 보호하는 경우, 또는 일시적 보호를 통한 월 수입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전년도에 고시된 최저임금 월액을 초과한 경우로 규정

라. 축종별 세부 사육·관리 기준 설정(별표1)

- 1) 동물 사육 시 밝기, 암모니아 농도관리, 육계 깔짚 교체, 돼지 절치·거세방법 등 축종별 세부관리 기준 규정

마. 동물생산업 시설·인력 기준 강화(별표9,10)

- 1) 생산업 인력기준을 75마리당 1인에서 50마리당 1인으로 강화하고, 사육설비 바닥 면적의 평평한판의 비율을 30%에서 50% 이상으로 상향
- 2) 출산 후 다음 출산 사이의 기간을 8개월에서 10개월로 연장

3) 폐쇄회로 녹화장치를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영업장소에도 설치하도록 의무화

바. 이동식동물미용 차량 영업 등록기준 마련(별표9)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기인증 받은 차량은 영업등록이 가능토록 하고, 미용차량의 튜닝기준을 마련

사. 동물판매업자의 대면판매 의무화 및 동물경매업자의 경매 참가자 영업등록 여부 확인 의무 부과(별표10)

아. 동물 생산업, 경매업 행정처분기준 강화(별표11)

차. 별지 서식 변경·신설(제2호, 제3호, 제15호, 제16호, 제17호~제23호, 제25호, 제29호, 제29-1호, 제30호)

1) 관련 조문 변경,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준수사항 변경 등에 따라 관련 별지서식 변경